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7 선고 2022가단503272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2022. 7. 13.

판결 선고2022. 9. 7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. 10. 29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금 22,456,49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,456,4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백규

별지